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3. 8. 30.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22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18. 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

나. 상정의결

-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8. 30.)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이호현)

가. 제안이유

- 문화센터 명칭 및 정의를 변경하여 소관부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로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며,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발맞추어 다자녀 가족 사용료 감면 확대를 통해 실질적 평등 보장과 문화센터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화센터 명칭 및 조례명 변경
  - 현행 : “문화센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

한 조례”

- 개정 : “동북합문화센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북합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1인)에 대해 사용료 면제 실시(안 제9조 제1항)
  - 현행 : 50% 감면
  - 개정 : 전액 면제
- 초저출생 시대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사용료 감면을 확대(안 제9조 제2항)
  - 현행 : 3자녀 50% 감면, 2자녀 10% 감면(막내 자녀 나이 13세까지)
  - 개정 : 3자녀 100% 감면(막내 자녀 나이 제한 없음), 2자녀 50% 감면(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장애인 복지법」 및 시행령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감사담당관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집행부 제출안 참조)
  - 입법예고(2023. 7. 21. ~ 2023. 8.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본 조례안은 “문화센터 명칭 및 조례명” 변경하고, 안 제9조제1항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1인에 한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하는 근거 신설 및 안 제9조 제2항에 초저출생 시대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 일부개정 내용임.
- 현행 명칭을 행정적으로 동북합문화센터로 반드시 변경해야 할 타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현행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이에 따른 일정한 예산이 소요될 것은 분명할 것인데, 소액이라 하더라도 변경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소요비용 보다 클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2조(정의) 중 “포함하여” 라는 표기가 다소 동북합문화센터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혼동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수정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집행기관 제출안	수정 검토
1. “동북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체육과 취미생활 및 평생교육 등의 증진을 위해 동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동북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체육과 취미생활 및 평생교육 등의 증진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또한, 만약 본 개정안이 가결된다면 부칙을 제1조 (시행일)과 제2조(동북합문화센터 명칭 변경의 적용례) 규정을 아래와 같이 반영하여 행정적 안내 표지 교체 등 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집행기관 제출안	수정 검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북합문화센터 명칭 변경의 적용례) 제3조 제2항에 따른 별표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 안 제9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는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구체적으로 감면 대상 범위(유형)를 정하는 조항은 제1항과 제2항임.

- 제1항은 개별 법률로 감면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을 나눈 것으로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아도 수강을 하면,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있는데, 이번 개정사항 안 제1항에는 장애인을 보조하는 1인에 대한 감면을 50%에서 100%로 하고, 이를 제8호에서 제1호로 변경하려는 것임.
- 제2항은 강남구에 주소를 둔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감면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 역시 100%와 50% 감면 대상을 나누어 정비하려는 것이기에 기존 각 호로 규정된 것을 각 목으로 세분한 것임.
- 수정검토 사항 등을 포함하여 “문화센터” 표기를 “동북합문화센터”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집행기관의 충실한 설득력과 합리성을 갖춘 설명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222호

제안일자 : 2023.8.30.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 제2조 정의 부분을 명확하게 하며, 안 제9조 중 사용료 감면 및 반환 할인 관련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 2. 수정주요내용

- 동북합주민센터의 의미의 혼동을 최소화하게 정비(안 제2조제1호)
- 문화센터 사용료 비용감면 표기의 명확화 및 간결화(안 제9조제2항 제1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2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포함하여” 를 “동주민센터에” 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제1호 중 “행복카드를 소지한” 을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으로 하고, “나이 제한 없음” 을 “18세까  
지”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행복카드를 소지한” 을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문화센터”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체육과 취미생활 및 평생교육 등의 증진을 위해 <u>특별히</u>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9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감면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8조제1항의 사용료를 <u>50퍼센트 감면</u>할 수 있으며, <u>감면대상</u>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동북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u>”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체육과 취미생활 및 평생교육 등의 증진을 위해 <u>동주민센터를 포함하여</u>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① ----- ----- ----- ----- 감면----- -----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은 -----.</p> <p>1. 100퍼센트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p>	<p>제2조(정의) ----- ----- -----.</p> <p>1. ----- ----- ----- ----- ----- <u>동주민센터에</u> ----- ----- -.</p> <p>2. ~ 4. (<u>현행과 같음</u>)</p> <p>제9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① (<u>현행과 같음</u>)</p> <p>1. &lt;개정안과 같음&gt;</p>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 장애인을 돕  
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  
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단, 1인에 한함)

2. 50퍼센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  
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18 민주유공  
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 민주유공  
자와 그 유족 또는 가  
족

다. 「특수임무유공  
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  
수임무유공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

라. 「독립유공자에  
우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

마. 「참전유공자 예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  
공자

바. 「고엽제후유의

<개정안과 같음>

중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사.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삭 제>

<개정안과 같음>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삭 제>

<개정안과 같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삭 제>

<개정안과 같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삭 제>

<개정안과 같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인이 동반한 1명(동일  
강좌 수강 시)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  
시 강남구(이하 “강남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  
감면대상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  
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과 감면비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50퍼센트

가. 다둥이 행복카드  
를 소지한 세 자녀 이

<삭 제>

<삭 제>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  
시 강남구(이하 “강남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  
감면대상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  
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  
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퍼센트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  
모와 자녀(막내 자녀  
나이 제한 없음)

2. 50퍼센트

가. 다둥이 행복카  
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  
를 제출한 -----

- 18세까지)

2. -----

가. -----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상 가정 부모와 자녀  
(막내자녀 13세까지)

나. ~ 라. (생략)  
2. (생략)

3. 10퍼센트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  
(막내자녀 13세까지)

③ ~ ⑤ (생략)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  
(막내자녀 18세까지)

나. ~ 라. (생략)  
2. (생략)

<삭제>

③ ~ ⑤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  
-----

나. ~ 라. (생략)  
2. (생략)

③ ~ ⑤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동북합문화센터  
명칭 변경의 적용례)

제3조제2항에 따른 별  
표1의 개정규정은 시  
행일로부터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센터”를 “동북합문화센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센터“란”을 ““동북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란”으로, “특별히”를 “동주민센터에”로 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기초기술교육”을 “기초 기술교육”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퍼센트 감면”을 “감면”으로, “감면대상은”을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100퍼센트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단, 1인에 한함)

2. 50퍼센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며”를 “있으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가목 중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를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두 자녀”로, “(막내자녀 13세까지)”를 “(막내자녀 나이 18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100퍼센트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 자녀 18세까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북합문화센터 명칭 변경의 적용례)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u> <u>설치·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u>문화센터</u>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문화센터</u>"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체육과 취미생활 및 평생교육 등의 증진을 위해 <u>특별히</u>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3조(설치 및 기능) ①·② (생략)</p> <p>③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u>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북합문화센터</u> <u>설치·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 <u>동북합문화센터</u> ----- ----- -----.</p> <p>제2조(정의) ----- -----.</p> <p>1. "<u>동북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u>"란 ----- ----- ----- <u>동주민센터에</u>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설치 및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2. (현행과 같음)</p>

3.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초기술교육

4. (생략)

제9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감면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8조제1항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 기초 기술교육

4.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① -----  
-----  
----- 감면-----  
-----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은 -----.

1. 100퍼센트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단, 1인에 한함)

2. 50퍼센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큰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  
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  
세환자

7.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자(65세 이상)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  
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  
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  
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50퍼센트

가.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  
내자녀 13세까지)

나. ~ 라. (생략)

2. (생략)

<삭 제>

<삭 제>

② -----  
-----  
-----  
----- 있으며, -----  
-----  
-.

1. 100퍼센트 : 다동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2. -----

가. -----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  
를 제출한 두 자녀-----  
(막내자녀 나이 18세까지)

나.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10퍼센트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  
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  
(막내자녀 13세까지)

③ ~ ⑤ (생 략)

<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동북합문화센터 명칭 변경의  
적용례)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별표1&gt;</p> <p><b>강남구 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연번</th> <th style="width: 40%;">명 칭</th> <th style="width: 50%;">위 치</th> </tr> </thead> <tbody> <tr><td>1</td><td><u>신사문화센터</u></td><td>압구정로 128 (신사동 548-1)</td></tr> <tr><td>2</td><td><u>논현1문화센터</u></td><td>학동로20길 25 (논현동 133-13)</td></tr> <tr><td>3</td><td><u>논현2문화센터</u></td><td>학동로43길 17 (논현동 114-24)</td></tr> <tr><td>4</td><td><u>청담문화센터</u></td><td>압구정로79길 26 (청담동 124-1)</td></tr> <tr><td>5</td><td><u>삼성1문화센터</u></td><td>봉은사로 616 (삼성동 161-2)</td></tr> <tr><td>6</td><td><u>삼성2문화센터</u></td><td>봉은사로 419 (삼성동 38-34)</td></tr> <tr><td>7</td><td><u>대치1문화센터</u></td><td>남부순환로391길 19 (대치동 646-2)</td></tr> <tr><td>8</td><td><u>대치2문화센터</u></td><td>영동대로65길 24 (대치동 980-9)</td></tr> <tr><td>9</td><td><u>대치4문화센터</u></td><td>도곡로77길 23 (대치동 928-22)</td></tr> <tr><td>10</td><td><u>역삼1문화센터</u></td><td>역삼로7길 16 (역삼동 829-20)</td></tr> <tr><td>11</td><td><u>역삼2문화센터</u></td><td>도곡로43길 25 (역삼동 761-26)</td></tr> <tr><td>12</td><td><u>도곡1문화센터</u></td><td>도곡로18길 57 (도곡동 892-6)</td></tr> <tr><td>13</td><td><u>도곡2문화센터</u></td><td>남부순환로378길 34-9 (도곡동 459)</td></tr> <tr><td>14</td><td><u>개포2문화센터</u></td><td>개포로 511 (개포동 182)</td></tr> <tr><td>15</td><td><u>개포4문화센터</u></td><td>개포로24길 33 (개포동 1204)</td></tr> <tr><td>16</td><td><u>세곡문화센터</u></td><td>밤고개로 286 (율현동 278-1)</td></tr> <tr><td>17</td><td><u>자곡문화센터</u></td><td>자곡로 100 (자곡동 628)</td></tr> </tbody> </table>	연번	명 칭	위 치	1	<u>신사문화센터</u>	압구정로 128 (신사동 548-1)	2	<u>논현1문화센터</u>	학동로20길 25 (논현동 133-13)	3	<u>논현2문화센터</u>	학동로43길 17 (논현동 114-24)	4	<u>청담문화센터</u>	압구정로79길 26 (청담동 124-1)	5	<u>삼성1문화센터</u>	봉은사로 616 (삼성동 161-2)	6	<u>삼성2문화센터</u>	봉은사로 419 (삼성동 38-34)	7	<u>대치1문화센터</u>	남부순환로391길 19 (대치동 646-2)	8	<u>대치2문화센터</u>	영동대로65길 24 (대치동 980-9)	9	<u>대치4문화센터</u>	도곡로77길 23 (대치동 928-22)	10	<u>역삼1문화센터</u>	역삼로7길 16 (역삼동 829-20)	11	<u>역삼2문화센터</u>	도곡로43길 25 (역삼동 761-26)	12	<u>도곡1문화센터</u>	도곡로18길 57 (도곡동 892-6)	13	<u>도곡2문화센터</u>	남부순환로378길 34-9 (도곡동 459)	14	<u>개포2문화센터</u>	개포로 511 (개포동 182)	15	<u>개포4문화센터</u>	개포로24길 33 (개포동 1204)	16	<u>세곡문화센터</u>	밤고개로 286 (율현동 278-1)	17	<u>자곡문화센터</u>	자곡로 100 (자곡동 628)	<p>&lt;별표1&gt;</p> <p><b>강남구 동북합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연번</th> <th style="width: 40%;">명 칭</th> <th style="width: 50%;">위 치</th> </tr> </thead> <tbody> <tr><td>1</td><td><u>신사동북합문화센터</u></td><td>압구정로 128 (신사동 548-1)</td></tr> <tr><td>2</td><td><u>논현1동북합문화센터</u></td><td>학동로20길 25 (논현동 133-13)</td></tr> <tr><td>3</td><td><u>논현2동북합문화센터</u></td><td>학동로43길 17 (논현동 114-24)</td></tr> <tr><td>4</td><td><u>청담동북합문화센터</u></td><td>압구정로79길 26 (청담동 124-1)</td></tr> <tr><td>5</td><td><u>삼성1동북합문화센터</u></td><td>봉은사로 616 (삼성동 161-2)</td></tr> <tr><td>6</td><td><u>삼성2동북합문화센터</u></td><td>봉은사로 419 (삼성동 38-34)</td></tr> <tr><td>7</td><td><u>대치1동북합문화센터</u></td><td>남부순환로391길 19 (대치동 646-2)</td></tr> <tr><td>8</td><td><u>대치2동북합문화센터</u></td><td>영동대로65길 24 (대치동 980-9)</td></tr> <tr><td>9</td><td><u>대치4동북합문화센터</u></td><td>도곡로77길 23 (대치동 928-22)</td></tr> <tr><td>10</td><td><u>역삼1동북합문화센터</u></td><td>역삼로7길 16 (역삼동 829-20)</td></tr> <tr><td>11</td><td><u>역삼2동북합문화센터</u></td><td>도곡로43길 25 (역삼동 761-26)</td></tr> <tr><td>12</td><td><u>도곡1동북합문화센터</u></td><td>도곡로18길 57 (도곡동 892-6)</td></tr> <tr><td>13</td><td><u>도곡2동북합문화센터</u></td><td>남부순환로378길 34-9 (도곡동 459)</td></tr> <tr><td>14</td><td><u>개포2동북합문화센터</u></td><td>개포로 511 (개포동 182)</td></tr> <tr><td>15</td><td><u>개포4동북합문화센터</u></td><td>개포로24길 33 (개포동 1204)</td></tr> <tr><td>16</td><td><u>세곡동북합문화센터</u></td><td>밤고개로 286 (율현동 278-1)</td></tr> <tr><td>17</td><td><u>자곡동북합문화센터</u></td><td>자곡로 100 (자곡동 628)</td></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비고: 복합문화센터 간판 설치의 규격, 서체 등은 구청장이 구 실정에 맞게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p>	연번	명 칭	위 치	1	<u>신사동북합문화센터</u>	압구정로 128 (신사동 548-1)	2	<u>논현1동북합문화센터</u>	학동로20길 25 (논현동 133-13)	3	<u>논현2동북합문화센터</u>	학동로43길 17 (논현동 114-24)	4	<u>청담동북합문화센터</u>	압구정로79길 26 (청담동 124-1)	5	<u>삼성1동북합문화센터</u>	봉은사로 616 (삼성동 161-2)	6	<u>삼성2동북합문화센터</u>	봉은사로 419 (삼성동 38-34)	7	<u>대치1동북합문화센터</u>	남부순환로391길 19 (대치동 646-2)	8	<u>대치2동북합문화센터</u>	영동대로65길 24 (대치동 980-9)	9	<u>대치4동북합문화센터</u>	도곡로77길 23 (대치동 928-22)	10	<u>역삼1동북합문화센터</u>	역삼로7길 16 (역삼동 829-20)	11	<u>역삼2동북합문화센터</u>	도곡로43길 25 (역삼동 761-26)	12	<u>도곡1동북합문화센터</u>	도곡로18길 57 (도곡동 892-6)	13	<u>도곡2동북합문화센터</u>	남부순환로378길 34-9 (도곡동 459)	14	<u>개포2동북합문화센터</u>	개포로 511 (개포동 182)	15	<u>개포4동북합문화센터</u>	개포로24길 33 (개포동 1204)	16	<u>세곡동북합문화센터</u>	밤고개로 286 (율현동 278-1)	17	<u>자곡동북합문화센터</u>	자곡로 100 (자곡동 628)
연번	명 칭	위 치																																																																																																											
1	<u>신사문화센터</u>	압구정로 128 (신사동 548-1)																																																																																																											
2	<u>논현1문화센터</u>	학동로20길 25 (논현동 133-13)																																																																																																											
3	<u>논현2문화센터</u>	학동로43길 17 (논현동 114-24)																																																																																																											
4	<u>청담문화센터</u>	압구정로79길 26 (청담동 124-1)																																																																																																											
5	<u>삼성1문화센터</u>	봉은사로 616 (삼성동 161-2)																																																																																																											
6	<u>삼성2문화센터</u>	봉은사로 419 (삼성동 38-34)																																																																																																											
7	<u>대치1문화센터</u>	남부순환로391길 19 (대치동 646-2)																																																																																																											
8	<u>대치2문화센터</u>	영동대로65길 24 (대치동 980-9)																																																																																																											
9	<u>대치4문화센터</u>	도곡로77길 23 (대치동 928-22)																																																																																																											
10	<u>역삼1문화센터</u>	역삼로7길 16 (역삼동 829-20)																																																																																																											
11	<u>역삼2문화센터</u>	도곡로43길 25 (역삼동 761-26)																																																																																																											
12	<u>도곡1문화센터</u>	도곡로18길 57 (도곡동 892-6)																																																																																																											
13	<u>도곡2문화센터</u>	남부순환로378길 34-9 (도곡동 459)																																																																																																											
14	<u>개포2문화센터</u>	개포로 511 (개포동 182)																																																																																																											
15	<u>개포4문화센터</u>	개포로24길 33 (개포동 1204)																																																																																																											
16	<u>세곡문화센터</u>	밤고개로 286 (율현동 278-1)																																																																																																											
17	<u>자곡문화센터</u>	자곡로 100 (자곡동 628)																																																																																																											
연번	명 칭	위 치																																																																																																											
1	<u>신사동북합문화센터</u>	압구정로 128 (신사동 548-1)																																																																																																											
2	<u>논현1동북합문화센터</u>	학동로20길 25 (논현동 133-13)																																																																																																											
3	<u>논현2동북합문화센터</u>	학동로43길 17 (논현동 114-24)																																																																																																											
4	<u>청담동북합문화센터</u>	압구정로79길 26 (청담동 124-1)																																																																																																											
5	<u>삼성1동북합문화센터</u>	봉은사로 616 (삼성동 161-2)																																																																																																											
6	<u>삼성2동북합문화센터</u>	봉은사로 419 (삼성동 38-34)																																																																																																											
7	<u>대치1동북합문화센터</u>	남부순환로391길 19 (대치동 646-2)																																																																																																											
8	<u>대치2동북합문화센터</u>	영동대로65길 24 (대치동 980-9)																																																																																																											
9	<u>대치4동북합문화센터</u>	도곡로77길 23 (대치동 928-22)																																																																																																											
10	<u>역삼1동북합문화센터</u>	역삼로7길 16 (역삼동 829-20)																																																																																																											
11	<u>역삼2동북합문화센터</u>	도곡로43길 25 (역삼동 761-26)																																																																																																											
12	<u>도곡1동북합문화센터</u>	도곡로18길 57 (도곡동 892-6)																																																																																																											
13	<u>도곡2동북합문화센터</u>	남부순환로378길 34-9 (도곡동 459)																																																																																																											
14	<u>개포2동북합문화센터</u>	개포로 511 (개포동 182)																																																																																																											
15	<u>개포4동북합문화센터</u>	개포로24길 33 (개포동 1204)																																																																																																											
16	<u>세곡동북합문화센터</u>	밤고개로 286 (율현동 278-1)																																																																																																											
17	<u>자곡동북합문화센터</u>	자곡로 100 (자곡동 628)																																																																																																											

# 비 용 추 계 서

##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개정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할인비율 변경 및 추가 예상 인원(수요)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세입	문화센터운영세입금	4,704,083	4,735,932	4,878,010	5,024,351	5,175,081	24,517,457
	소계(a)	4,704,083	4,735,932	4,878,010	5,024,351	5,175,081	24,517,457
세출	문화센터 위탁운영	19,480,129	21,638,641	24,018,892	26,660,970	29,593,677	121,392,309
	소계(b)	19,480,129	21,638,641	24,018,892	26,660,970	29,593,677	121,392,309
□ 총 비용(a-b)		-14,776,046	-16,902,709	-19,140,882	-21,636,619	-24,418,596	-96,874,852

- ※ 연간 수입금 3% 증가 반영(2022년도 세입금: 3,167,763천원)
- ※ 조례공포 시행 예정일(2023.9월 초)부터 감면할인 적용
- ※ 세출 : 중기재정계획 상 예산액 반영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구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구비		19,480,129	21,638,641	24,018,892	26,660,970	29,593,677	121,392,309
민간							
합계		19,480,129	21,638,641	24,018,892	26,660,970	29,593,677	121,392,309

5. 작성자 : 주민자치과 행정9급 최보운(02-3423-5204)